

의안번호	2204814
의 퇴 인	김형동 의원
회 답 일	2024. 10. 30.
추 계 번호	24B4376

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의2 (학교환경교육의 실시)	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대한 환경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함(제1항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교육의 목표 및 성취 기준과 운영 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학교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함(제2항) 학교환경교육과정의 편성·운영 및 수업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 학교의 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·가정·지역 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(제4항) ※ 각 학교에서 실시 중인 학교환경교육의 교육시간, 교육 횟수, 교육결과에 대한 보고 등이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상이하여 환경부장관이 환경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장이 이를 반영하여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조의2 (학교환경교육의 실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환경부장관이 환경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장이 이를 반영하여 학교환경교육을 실시(안 제10조의2)

-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라 각 학교에서 실시 중인 학교환경교육의 교육시간, 교육횟수, 교육결과에 대한 보고 등이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상이하여 환경부장관이 환경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장이 이를 반영하여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임
- 환경부에 따르면, 학교환경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·제공 사업 및 교사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고 2024년 예산으로 31억 5,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

[표 1] 학교환경교육 분야 예산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4년 예산	비고
총계	3,150	
환경교육 콘텐츠 개발·제공(9개 사업)	2,368	
■ 유아 기후환경교육관 설치·운영 * 신규 설치 : '24년 2개소(예산 최초 반영)	1,204 출연금180	
■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 운영	출연금846	
■ 환경교육교구·우수도서 대여	출연금58	
■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·운영	출연금80	
■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운영	—	'23년 종료
■ 꿈꾸는 환경학교 지원	—	'23년 종료
■ 환경동아리 지원	—	'23년 종료
■ 환경일기장 쓰기 및 환경방학 프로젝트	—	'23년 종료
■ 지속가능한 환경특화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	—	'25년 신규
■ 환경체험교육관(에코스쿨) 조성	—	서울 '21~'26 부산 '21~'25
교사 역량 강화(2개 사업)	782	
■ 기후환경교육 지원(헬프데스크 운영) * 교육청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·제공, 컨설팅 등	282	
■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(환경교육전문가 양성) * 예비 교원연수 운영 등 학교 환경교육 분야	500	

자료: 환경부

-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학교환경교육의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하고 학교환경교육과정의 편성·운영 및 수업 인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할 경우 학교별로 현재보다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어 추가 인력 및 예산 투입의 필요가 생길 수 있으나, 개정안은 학교환경교육과정의 편성·운영 및 수업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배아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nabo.go.kr